

이천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정 1981.03.01.
제1차 개정 (이전규칙최종인가일)
제2차 개정 2022.10.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의 유아교육 및 돌봄 운영에 관해 필요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이천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명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 2065번길 112에 위치한다.

제2장 교육연한 및 학년도, 학기,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및 학년도)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수업 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원(교)기념일
4. 하계, 동계, 학년 말 휴가
5. 원장 재량휴업일

② 제1항 4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제5호의 휴업일을 고려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8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장이 정한다.

③ 유치원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 ⑤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원은 일반학급 1학급으로 편성하고 인가 학급 범위 내에서 방과후 과정반 1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정원) ① 연령별 학급편성 및 정원은 당해연도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학급 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② 학기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결원을 보충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9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고 창의적인 이천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② 교육내용은 유치원 및 지역사회의 상황,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운영한다.

- ③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의 교육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하며 놀이와 쉬이 있는 돌봄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제5장 수업일수, 수업시간, 수업운영 방법, 건강검진 및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제10조(수업일수)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유아교육법 제31조 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연간 30일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시간) ① 본원의 하루 수업시간은 4~5시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② 1일 교육 활동의 시종 시각은 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수업운영방법) ① 수업 운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교사는 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활동은 놀이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실환경과 교재·교구는 계절, 주제, 행사 및 유아의 요구 등에 따라 적절히 재구성한다.

④ 교육활동은 발표, 토의, 관찰, 실험, 조사, 견학 등 유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들을 활용한다.

⑤ 교재·교구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수매체를 활용하되, 가능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주는 실물자료를 사용한다.

⑥ 교사는 확산적 질문을 많이 하여 유아의 호기심과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⑦ 교사는 방송프로그램 및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⑧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인근 유치원, 학교와 협력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 또는 학급을 달리하는 유아를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⑨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⑩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의 수업운영방법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제13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유치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한다.

제14조 (방과후 과정 운영) ①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 당해연도 「경기도교육청 방과후 과정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② 방과후 과정반 운영비의 합리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방과후 과정 수익자 부담금 책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여 운영한다.

제6장 입학, 재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제15조(입학시기) ① 입학시기는 연중으로 하며, 학급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② 본원의 중도 입학은 당해연도 유아선발 및 결원 충원 계획에 의거한다.

③ 중도입학은 다음 학년도 유아모집계획 시행 전까지 허가한다.

제16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17조(재입학) 만3·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18조(전학) 본원으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제19조(휴학/퇴학)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이나 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원서 및 퇴학서를 받아 처리한다.

①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

2. 수업료 징수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

3.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제20조(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② 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3,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

제7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 비용 징수

제21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 유치원의 유아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과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기타 비용 징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징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8장 규칙 개정 절차

제23조(규칙개정절차)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장이 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확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